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62
----------	-------

발의연월일 : 2026. 1. 22.

발 의 자 : 조정식 · 안태준 · 이해식
조인철 · 정태호 · 이수진
김현정 · 남인순 · 박선원
김주영 · 전용기 · 이학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이하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시행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죄에 대하여 위임받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제한 기간을 형량에 대한 고려 없이 20년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고, 특히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중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같은 형량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와 달리 아무런 제한 없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형량의 수준이 유사한 다른 범죄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로 추가하여 비례의 원칙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안 제16조의4제2항).

법률 제 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4제2항제1호마목 중 “제9조까지, 제14조”를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4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의4(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 라. (생략)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6조의4(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 ----- ----- ----- ----- -----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죄	----- -----
바. (생 략) 2. ~ 4. (생 략) ③ ~ ⑥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